

2023-05

자동차 제작 및 수입을 위한 제작자등 등록·변경·반납 신청 매뉴얼

2023



※ 본 매뉴얼은 '국토교통부' 또는 '자동차민원 제작자포털'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통합검색 '제작자등'으로 검색

순서

I. 제작자등 개요	3
1. 제작자등 등록이란?	
2. 제작자등의 의무	
3. 제작자등 등록 절차	
II. 등록 신청	6
1. 자기인증 능력 미확보 제작자등 등록	6
1-1. 판매목적으로 등록하는 경우	
1-2. 자가사용목적을 등록하는 경우	
2. 자기인증 능력 확보 제작자등 등록	8
2-1. 자기인증 능력 확보 제작·조립자	
2-2. 자기인증 능력 확보 수입자	
III. 변경 및 재발급 신청	10
1. 법인명, 대표자, 사업장소재지 변경	
2. 자동차의 종류, 등록목적, 사후관리 업체 변경	
3. 외국 최초제작자의 계약사항 변경	
4. 제작자등 양도·양수	
4. 재발급 신청	
IV. 반납신청	16
1. 제작자등 등록 반납 조건	
2. 제작자등 등록 반납 절차	
3. 반납 신청 전 자가 진단	
4. 반납 신청 구비서류	
5. 반납 사실 증명서 발급 및 수령	
참고 1. 등록면허세 납부 방법	20
참고 2. 민원 처리 서류 발급 및 연락처	21
참고 3. 신청서 작성 요령	22
참고 4. 자동차 무상수리 대행확인서·계약서 예시	29
참고 5. 자기인증 능력 확보 수입자 등록 시 유의사항	32

I

제작자등 등록 신청

I - 1

제작자등 등록이란 ?

- 제작자등 등록이란 자기인증을 위하여 제작·시험·검사시설 등을 국토교통부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 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하는 것을 자기인증이라 하며, 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하여 자기인증을 하고자 하는 자를 제작자등이라 합니다.
-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제작·시험·검사 시설 등 자기인증 능력을 갖추지 못한 제작자등은 성능시험대행자(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로부터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를 받아 자기인증을 하여야 하며, 자기인증 절차 이전에 제작자등 등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자기인증 능력 확보 유무, 등록 목적, 자동차 종별 등에 따라 구비서류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기인증 능력의 기준 】

<국내제작자>

-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차대번호표기부호를 배정받은 자일 것
- 연간 제작·조립대수가 2500대 이상이거나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연간 500대 이상 제작·조립하는 자
- 제작·조립하려는 차종에 대한 안전기준 시험시설 확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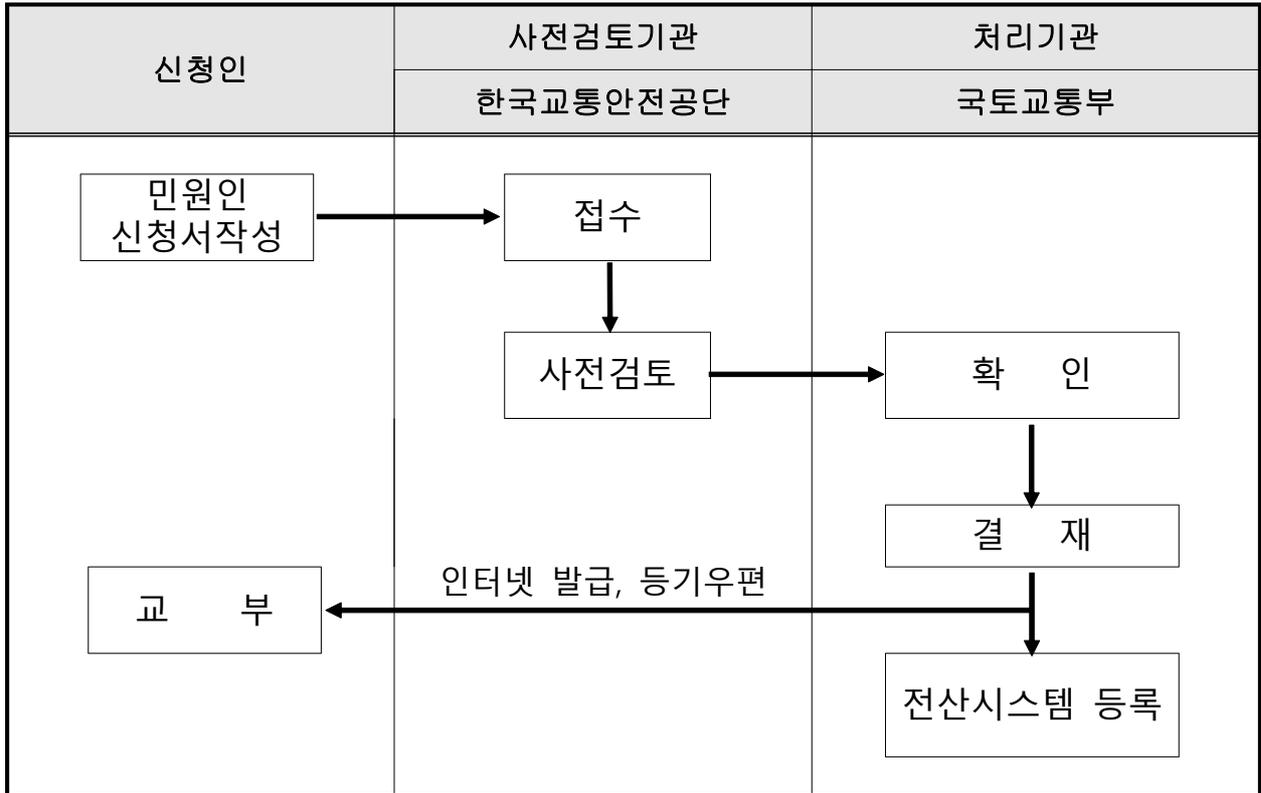
<수입자>

-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차대번호표기부호를 배정받거나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연간 500대 이상 제작하는 외국 최초제작자의 국내대리인으로 지정되어 법 제31조에 따른 제작결함의 시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한 자(수입자에 한함)

* 관련근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 ① (등록) 제작자등 등록을 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하여야 하며,
- 동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자기인증을 하여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시설 및 기술 인력을 확보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 ※ 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사후관리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 제17호에 따라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② (변경) 제작자등 등록을 한 자는 등록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변경사항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 신청 하여야 하며,
-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제6항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을 확인한 결과 등록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등록 사항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 ③ (반납)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2에 따라 제작자등 등록을 반납하고자 할 때에는 반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① 업무흐름도



② 신청방법 : 인터넷 및 우편접수

- (인터넷 접수) 자동차민원 제작자포털 maker.ecar.go.kr → 민원신청 → 등록민원 → 제작자등 등록·변경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

- (우편 접수)

(우편번호) 18247

☎ 031-630-5879

(주소)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삼존로 200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자동차인증처
제작자등 등록담당 귀하

※ 등기 우편으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배는 분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II

제작자등 등록신청

II-1-1

자기인증 능력 미확보 제작자등 등록 (판매목적)

- ① 제작자등 등록신청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18호 서식])
 - ②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일반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인 신분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 *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사항에 대하여 동의(제작자등 등록 신청서를 통해 동의)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 제외 가능
- ③ 판매목적으로 등록하는 경우 (이륜자동차 제작자등은 제외)

▷ '가', '나' 중 해당하는 경우에 따라 선택하여 제출

가. 제작자가 정비업을 등록한 경우

- 자동차 무상수리확인서[참고 4. p29] 및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사본

나. 제작자가 정비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 자동차 무상수리대행계약서 사본[참고 4. p30]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사본(정비업체 소유)

※ 자동차 제작자등은 해당 자동차를 정비할 수 있는 정비업*으로 등록하여 직접 사후관리를 하거나 정비업체와 무상수리대행계약을 맺고 정비업체를 통해 판매한 자동차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 해당 자동차를 정비(사후관리)할 수 있는 정비업이란?

☞ 자동차관리법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1) 자동차종합정비업 : 모든 자동차의 가능 (승용, 승합, 화물, 특수)

2)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 승용자동차·경형 및 소형의 승합·화물·특수 자동차 가능

3) 자동차전문정비업 또는 원동기전문정비업은 불가

- ④ 당해 연도 납부한 등록면허세 영수증 사본 [참고 1. p20]

- ① 제작자등 등록신청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18호 서식])
- ②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일반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은 신분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 *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사항에 대하여 동의(제작자등 등록 신청서를 통해 동의)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 제외 가능
- ③ 당해 연도 납부한 등록면허세 영수증 사본 [참고 1. p20]

【 외국에서 직접 사용하던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수입할 때 참고사항 】

※ 외국에서 사용하던 자동차는 **세관의 통관(일반수입, 이사회물 수입) 결과**에 따라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 **(일반수입)** 세관을 통관할 때 수입신고서에 일반수입으로 통관된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제작자등 등록을 한 다음 자기인증절차를 거쳐야 자동차 등록이 가능합니다.

☞ **(이사회물 수입)** 세관 통관 시 수입신고서에 이사회물로 통관된 경우는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4(이륜차의 경우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자기인증의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신규검사***를 받으면 자동차 등록이 가능합니다.

※ 이사회물 신규검사는 제작자등 등록 절차 없이 **자동차**는 가까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이륜자동차**는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가능.

① 제작자등 등록신청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18호 서식])

②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사항에 대하여 동의(제작자등 등록 신청서를 통해 동의)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 제외 가능

③ 자기인증 능력 기준을 증빙하는 자료

1) 자동차관리법 제1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차대 번호표기부호배정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8호 서식]

2) 연간 제작·조립대수가 2천 500대 이상이거나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연간 500대 이상 제작·조립 실적을 증빙하는 서류

* 신규 제작·조립자인 경우에는 연간 제작·조립계획대수를 말함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제3호에 따른 안전기준을 시험시설의 확보내역

④ 제49조의2에 따른 자동차 사후관리 시설 및 기술인력의 확보내역 또는 확보계획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사본 등)

⑤ 당해 연도 납부한 등록면허세 영수증 사본 [참고 1. p20]

※ 이륜자동차 제작자는 ③-2), ③-3), ④ 호 제외 ※

① 제작자등 등록신청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18호 서식])

②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사항에 대하여 동의(제작자등 등록 신청서를 통해 동의)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 제외 가능

③ 외국 최초제작자의 국내대리인으로 지정된 자로서 자동차관리법 제 31조에 따른 제작결함시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계약서

- 계약서가 국문이 아닌 경우 「공증인법」에 정하는 “공증인”에 의해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33조(영문번역문의 인증)에 따라 발급된 서류* [참고 5. p36]

*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5호 서식]

④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발급받은 차대번호표기부호배정서 사본

* 원제작자의 차대번호표기부호배정서 : WMI [참고 5. p32]

⑤ 제49조의2에 따른 자동차 사후관리 시설 및 기술인력의 확보내역 또는 확보계획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사본 등)

⑥ 당해 연도 납부한 등록면허세 영수증 사본 [참고 1. p20]

※ 이륜자동차 제작자는 ⑤ 호 제외 ※

Ⅲ

변경 및 재발급 신청

Ⅲ- 1

법인명 · 대표자 · 사업장소재지 변경

- ① 제작자등 등록신청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18호 서식])
- ② 자동차제작자등 등록증 원본
 - * **등록증 원본 분실시** 신청서 상단에 '제작자등 등록증 원본 분실' 자필 기재 후 인장 또는 서명 날인
- ③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사항에 대하여 동의(제작자등 등록 신청서를 통해 동의)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 제외 가능
- ④ 당해 연도 납부한 등록면허세 영수증 사본 [참고 1. p20]

□ 공통 서류

- ① 제작자등 등록신청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18호 서식])
- ② 자동차제작자등 등록증 원본

* **등록증 원본 분실시** 신청서 상단에 '제작자등 등록증 원본 분실' 자필 기재 후 인장 또는 서명 날인

- ③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일반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은 신분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사항에 대하여 동의(**제작자등 등록 신청서를 통해 동의**)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 제외 가능

- ④ 당해 연도 납부한 등록면허세 영수증 사본 [참고 1. p20]

□ 항목 별 유의사항

- ① (차종 변경) 자동차의 종류를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경우 자동차 (승용, 승합, 화물, 특수)만 해당하며, 이륜자동차 추가는 신규 등록 신청하여야 합니다.
- ② (등록 목적) 판매목적으로 변경 및 사후관리 업체(정비업체)를 변경하는 경우 (이륜자동차 제작자등은 제외)

▷ '가', '나' 중 해당하는 경우에 따라 선택하여 제출

가. 제작자가 정비업을 등록한 경우

- 자동차 무상수리확인서[참고 4. p29] 및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사본

나. 제작자가 정비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 자동차 무상수리대행계약서 사본[참고 4. p30]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사본(정비업체 소유)

① 제작자등 등록신청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18호 서식])

② 자동차제작자등 등록증 원본

* 등록증 원본 분실 시 신청서 상단에 '제작자등 등록증 원본 분실' 자필 기재 후 인장 또는 서명 날인

③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사항에 대하여 동의(제작자등 등록 신청서를 통해 동의)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 제외 가능

④ 변경 사항을 증빙하는 서류

- 증빙서류가 국문이 아닌 경우 「공증인법」에 정하는 “공증인”에 의해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33조(영문번역문의 인증)에 따라 발급된 서류* [참고 5. p36]

*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41호 서식에 의한 표지, 번역문, 원문, [별지 제45호 서식]

⑤ 당해 연도 납부한 등록면허세 영수증 사본 [참고 1. p20]

□ 자동차제작자등을 양수 · 양도하려는 경우 양수한 자와 양도한 자 각각 변경신청을 하여야합니다.

□ 국내 제작 · 조립자

① 제작자등 등록신청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18호 서식])

② 자동차제작자등 등록증 원본

* 등록증 원본 분실 시 신청서 상단에 '제작자등 등록증 원본 분실' 자필 기재 후 인장 또는 서명 날인

③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일반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은 신분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사항에 대하여 동의(제작자등 등록 신청서를 통해 동의)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 제외 가능

④ 양도·양수를 증빙하는 서류 (사업양수도, 계약서 등)

- 증빙 서류에는 반드시 자동차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제작 결함의 시정에 대한 책임과 제32조의2에 따른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 관리 의무 등에 대하여 승계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함
- 계약서 작성 유의사항 [참고 5. p34]

⑤ 당해 연도 납부한 등록면허세 영수증 사본 [참고 1. p20]

□ 외국 최초 제작자의 국내 대리인 변경

① 제작자등 등록신청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18호 서식])

② 자동차제작자등 등록증 원본

* 등록증 원본 분실 시 신청서 상단에 '제작자등 등록증 원본 분실' 자필 기재 후 인장 또는 서명 날인

③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일반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은 신분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사항에 대하여 동의(제작자등 등록 신청서를 통해 동의)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 제외 가능

④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발급받은 차대번호표기부호배정서 사본

* 원제작자의 차대번호표기부호배정서 : WMI [참고 5. p32]

⑤ 외국 최초 제작자와의 계약 증빙 서류

- 증빙서류가 국문이 아닌 경우 「공증인법」에 정하는 “공증인”에 의해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33조(영문번역문의 인증)에 따라 발급된 서류* [참고 5. p36]

*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5호 서식]

- (양도자) 외국 최초제작자와의 계약 종료를 증빙*하는 서류

- (양수자) 외국 최초제작자와의 신규 계약을 증빙*하는 서류

⑥ 기존 자기인증한 자동차에 대하여 제작결함 시정에 대한 책임 및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양도·양수를 증빙하는 서류 [참고 5. p34]

⑦ 당해 연도 납부한 등록면허세 영수증 사본 [참고 1. p20]

① 제작자등 등록신청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18호 서식])

② 자동차제작자등 등록증 원본

* **등록증 원본 분실 시** 신청서 상단에 '제작자등 등록증 원본 분실' 자필 기재 후 인장 또는 서명 날인

③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일반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은 신분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사항에 대하여 동의(**제작자등 등록 신청서를 통해 동의**)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 제외 가능

④ 당해 연도 납부한 등록면허세 영수증 사본 [참고 1. p20]

IV

반납 신청

IV- 1

제작자등 등록 반납 조건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발급된 제작자등 등록증을 반납하고자 할 때에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2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1)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판매를 목적으로 등록을 한 경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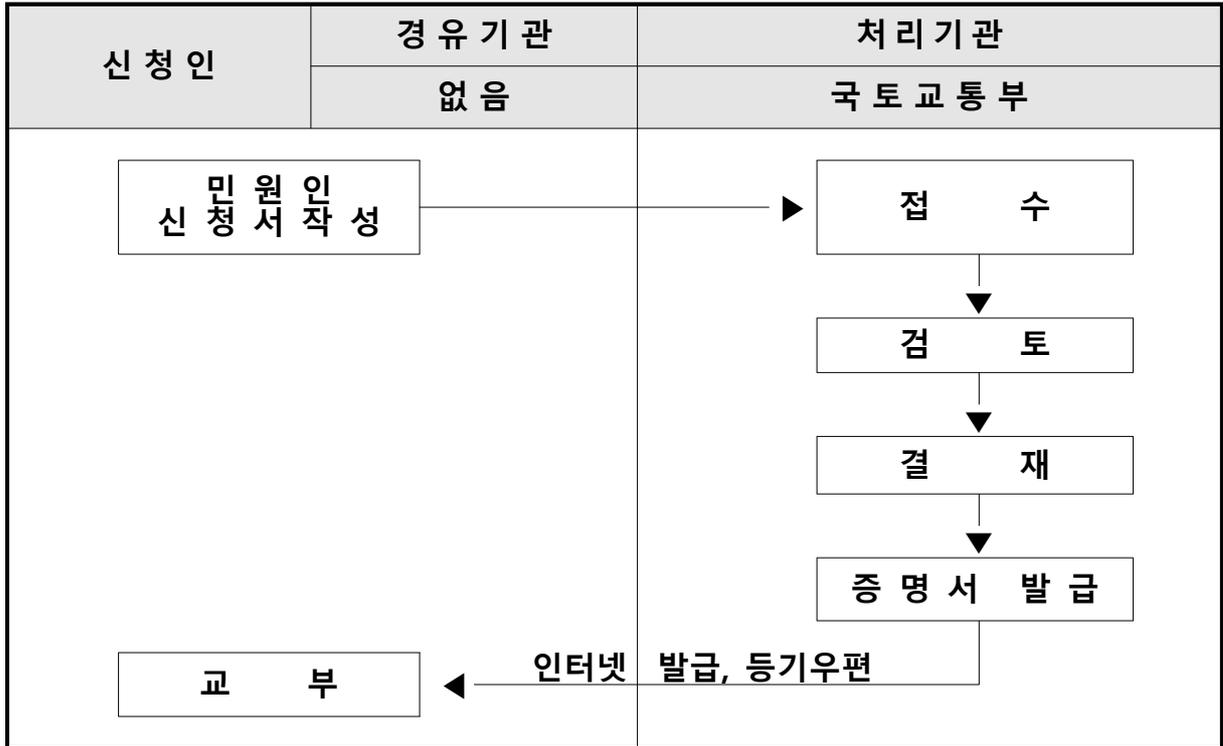
① 판매를 하였으나 폐차 등의 사유로 해당 자동차가 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② 그 밖의 판매실적이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등록증 반납이 완료된 제작자등은 기술검토, 안전검사, 제작증 정보 전송 등을 할 수 없으며, 제작자등 등록 부활 및 반납철회가 불가하오니 반납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납 신청서 작성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작성 오류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청서를 신중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① 업무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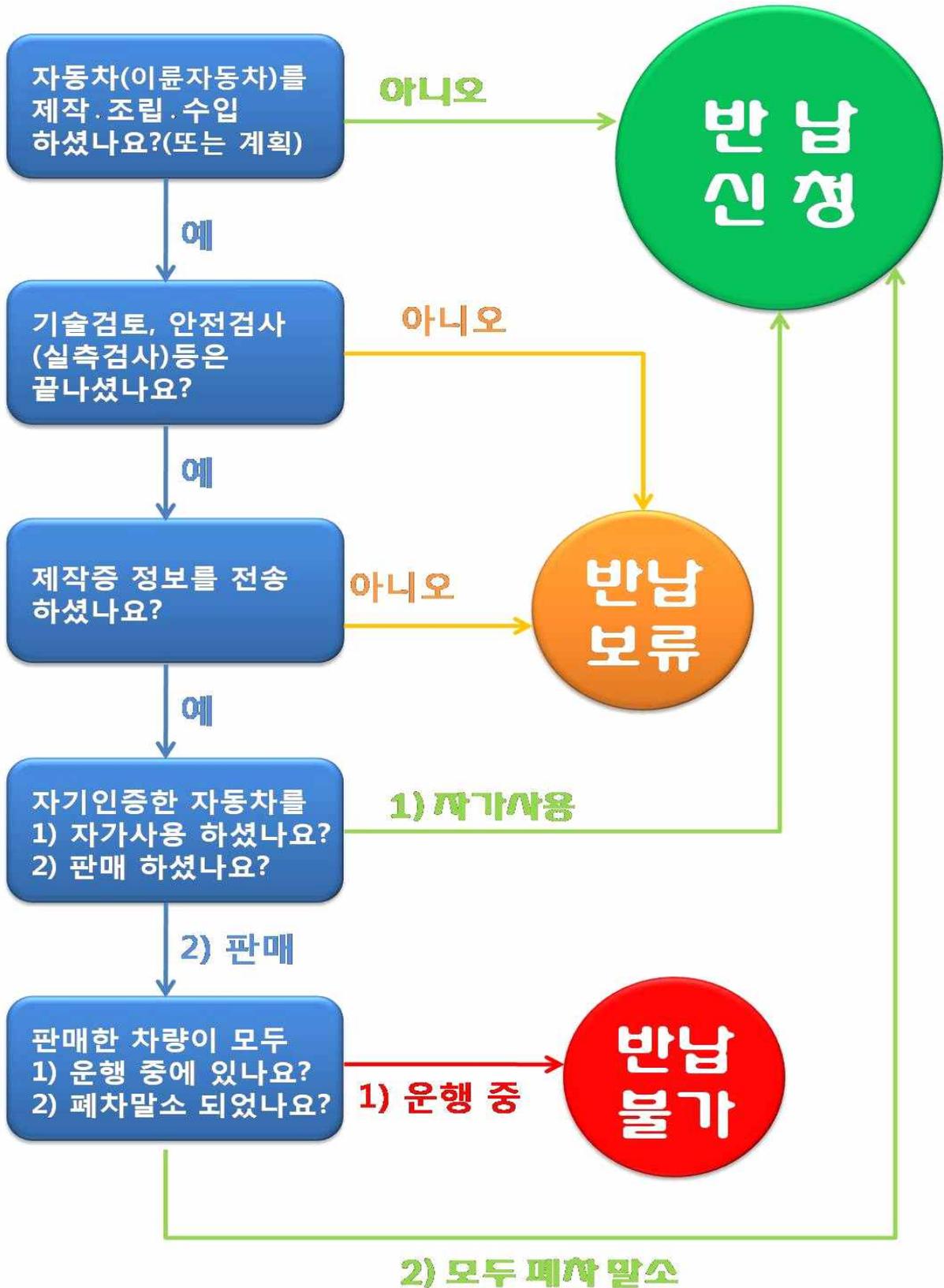
② 신청방법 : 인터넷 및 우편접수

- (인터넷 접수) 자동차민원 제작자포털 maker.ecar.go.kr → 민원신청 → 등록민원 → 제작자등 등록 반납 신청
- (우편 접수)

(우편번호) 30103 ☎ 044-201-3842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제작자등 등록담당 귀하

※ 등기 우편으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배는 분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IV- 4

반납 신청 구비서류

- ① 제작자등 등록 반납 신청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 ② 자동차제작자등 등록증 원본
 - * 등록증 원본 분실 시 신청서 상단에 '제작자등 등록증 원본 분실' 자필 기재 후 인장 또는 서명 날인

- ③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일반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은 신분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 *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사항에 대하여 동의(제작자등 등록 신청서를 통해 동의)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 제외 가능

※ **법인 또는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

IV- 5

반납 사실 증명서 발급 및 수령

- 제작자등 등록증 반납 신청을 하시면 15일 이내 수리 후 반납사실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 반납 사실 증명서는 신청서상의 주소로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 별도의 위임 규정이 없어 신청인으로부터 임의로 위임장을 받아서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인정되지 않으며, 대리 수령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1

등록면허세 납부 방법

- 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개인의 경우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의 지방세 창구(또는 등록면허세 담당부서)에 아래의 등록면허세명을 말씀하시고 고지서 발급을 요청하여 납부하시고, 기타 등록면허세 관련 문의는 해당 지자체에 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세명 : 「자동차관리법」제30조에 따른 자동차의 자기인증을 위한 제작자등의 등록(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별표 제2종 100호)

- 지방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등록면허세 납부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므로, 제작자등 등록 신청 전 면허세를 납부하고 영수증 사본을 신청서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법 제38조(면허세의 납세확인) ① 면허의 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면허 증서를 발급하거나 송달하여야 한다.

- 지방세법 제35조에 따라 제작자등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매년 부과 될 수 있으며, 등록증 1장당 개별 부과됩니다.

제작자등 등록증은 제작구분과 종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대 4장까지 발급되며, 등록면허세는 등록증 1장당 개별 부과되므로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제작자등 등록증 유형별 분류 】



참고 2

민원 처리 서류 발급 및 연락처

- 자동차제작자등록증 및 반납 사실 증명서는 제작자가 신청한 주소지(신청서에 작성한 주소(또는 사업장소재지))로 등기우편 발송 또는 인터넷 발급하고 있습니다.
 - 위임 등의 규정이 없어 신청인으로부터 임의로 위임장을 받아서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인정되지 않으며, 대리 수령이 불가합니다.
- 사업장 이전 등으로 수령이 어려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소재지 변경에 따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변경신청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관련 업무	수행 기관	연락처
자동차제작자등록 · 변경 신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031-630-5879
자동차제작자 반납 신청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044-201-3842
배출 및 소음인증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032-560-7634, 7637
자기인증을 위한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자동차 : 031-630-5889 이륜차 : 031-630-5879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작업 확인증 발급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튜닝처	054-440-3044, 3045

참고 3

신청서 작성 요령

1 제작자등 등록·변경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8. 1. 18.>

제작자등 등록·변경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16일(7일)
------	------	-----	--------------

1 신청인	제작자명(법인명)	(주) 용길동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100000-0000000
	대표자 설명	용길동	주민등록번호	123456 - 1236458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도교동북 (전화번호 : 044-123-1234)		

2	상호(법인명)	(*수입자만 해당)		
	주소	(전화번호 :)		

3	사업장소재지			
4	제작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국내 제작·프린터 <input type="checkbox"/> 수입자		
5	등록목적	<input checked="" type="checkbox"/> 판매목적 <input type="checkbox"/> 자가사용		

6	제작등을 하려는 자동차	<input type="checkbox"/> 완성자동차 <input checked="" type="checkbox"/> 미완성자동차		
----------	--------------	---	--	--

7 *미완성자동차의 경우 제작자등이 접하는 차종)	제작등을 하려는 자동차의 종류 및 규모	종류	규모			
		<input checked="" type="checkbox"/> 승용	<input checked="" type="checkbox"/> 대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소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대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승합	<input checked="" type="checkbox"/> 대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소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대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화물	<input checked="" type="checkbox"/> 대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소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대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특수	<input checked="" type="checkbox"/> 대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소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대형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제3항 및 제33조제3항에 따라
 제작자등 등록을 신청합니다.
 제작자등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2023 년 00 월 00 일

8 신청인 **(주) 용길동**

수석이사
 홍길동 (본인)
 대표이사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합부서류	1. 자동차 생산규모(최근 3년간 제작·프린트 실적) 2. 동계등록허가주(180)에서 발급받은 차대번호표기부호해당서 사본(수입자만 해당합니다) 또는 총인원 법인의 자동차의 최근 3년 동안 최대 생산실적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 시험시설의 확보 내역 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자동차안전검사 시설 확보내역 5. 외국 최초제작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계약서(수입자만 해당합니다) 6. 등록증(합어 부스계) 원 영수증만 해당합니다) 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에 따른 자동차 사후관리 시설 및 기술인력의 확보내역 또는 확보계획(자기인증을 하여 관재하려는 자만 해당합니다)	무부호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신청인 **(주) 용길동**

수석이사
 홍길동 (본인)
 대표이사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국토교통부 (제2차관공통 관청부서)		국토교통부 (제2차관공통 관청부서)		국토교통부 (제2차관공통 관청부서)		국토교통부 (제2차관공통 관청부서)

210mm×297mm[역상지(80g/㎡) 또는 등질지(80g/㎡)]

변경등록 및 재발급 신청도 반드시 모든 항목을 작성해야 합니다.

① 신청인

1) 제작자명(법인명)

- 법인인 경우 법인명,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명, 개인인 경우 개인 성명 기재

2)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개인은 미작성

3) 대표자 성명

- 법인·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개인인 경우 개인 성명 기재

4) 주민등록번호

- 법인·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개인인 경우 본인 주민등록번호 기재(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의 번호 기재)
※ 외국인이며 등록번호가 없을 경우 : 생년월일 기재 후 여권 사본첨부

5) 주소

-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상의 사업장 소재지 주소,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상의 주소 기재(제작자등으로 등록하는 신청인의 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 업무담당자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하며 고객센터 등 기재불가

② 원제작자(자기인증 확보 수입자(지정수입자)만 작성)

1) 상호(법인명) : 외국의 최초제작자명을 기재(영문)

2) 주소 : 최초제작자 소재지 영문 기재(원제작자의 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 업무담당자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하며 고객센터 등 기재불가

③ 사업장 소재지

-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 주소,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상의 주소 기재

④ 제작구분(제작구분에 따라 제작자등 등록증 각각 발급)

- '국내 제작·조립자' 또는 '수입자' 중 해당하는 경우에 반드시 체크(중복체크 가능하며, 등록증은 각각 발급됨)

⑤ 등록목적 : 해당하는 경우에 반드시 체크(중복체크 가능)

- 판매목적 : 제작자등 등록 후 자기인증한 자동차(이륜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 자가사용 : 제작자등 등록 후 자기인증한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작자등 등록'하는 자가 직접 사용(자가사용)하는 경우

⑥ 제작 등을 하려는 자동차

- '완성자동차' 또는 '미완성자동차'*중 해당하는 경우에 반드시 체크

※ **트레일러**(캠핑, 보트 트레일러 등)는 **완성자동차**에 해당함.

[미완성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의4호에서 미완성자동차란 '차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구조·장치를 갖춘 자동차로서 용법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도록 추가적인 제작·조립 공정이 필요한 자동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차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구조·장치를 갖춘 자동차"란 차대(차대가 없는 경우에는 차체),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주행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완충장치, 연료장치 및 전기·전자장치를 갖춘 자동차를 말한다고 규정

⑦ 제작 등을 하려는 자동차의 종류 및 규모

- 제작·조립자 등이 생산 또는 계획하고 있는 차종, 수입자의 경우에는 수입하고자 하는 차종 및 규모 체크 (중복체크 가능)

* 자동차, 이륜자동차를 구분하여 제작자등 등록증 각각 발급

⑧ 신청인

- 법인인 경우 법인명 또는 대표자 성명과 인장 또는 서명날인, 사업자 및 개인은 대표자 인장 또는 서명날인

* 법인의 경우 반드시 **회사명, 대표자, 대표자의 이름 세 가지 요소를** 갖추어서 **서명날인** 예 : [○○주식회사 대표이사 홍길동(인)]

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제작자등 등록 신청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자 등록증을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작자등 등록 신청서' 하단의 동의서를 통해 동의한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자동차제작자등 등록 반납 신청서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선임]

자동차제작자등 등록 반납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① 신청인	제작자명(명칭) ④ 홍길동 (서명 홍길동 인)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123456-0000000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전화번호 044-201-3845
② 반납정보	등록번호 △△△	
	제작구분 <input type="checkbox"/> 국내 제작·조립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수입자	
	자동차의 종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승용 <input type="checkbox"/> 승합 <input type="checkbox"/> 화물 <input type="checkbox"/> 특수 <input type="checkbox"/> 이륜	
③ 반납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등록을 한 자 <input type="checkbox"/> 판매 목적으로 등록을 한 자 중 판매를 하였으나 폐차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자동차(이륜 자동차를 포함한다)가 운행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판매실적이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1년 4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자동차제작자등 등록증 원본 2. 개인인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수수료
발령장 부활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자동차제작자등이 자기인증한 자동차(이륜자동차)의 등록정보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간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자동차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자동차간섭정보처리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위와 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⑤ 신청인 **홍길동** (서명 **홍길동** 인)

처리절차



210mm × 297mm(직접지 50g/㎡)

반드시 신청서상의 모든 내용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① 신청인

1) 제작자명(명칭)

- 법인인 경우 법인명,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명, 개인인 경우 개인 성명 기재

* 법인(사업자)명이 변경되어 기존 내용과 다를 경우 제작자등 등록증의 법인(사업자)명으로 작성, 개인 제작자등이 개명한 경우도 동일

2)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개인인 경우 기재 불필요.

3) 성명(대표자)

- 법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개인인 경우 개인 성명 기재

4) 주민등록번호

-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개인인 경우 본인 주민등록번호 기재(법인은 법인등록번호)

* 외국인이며 등록번호가 없을 경우 : 생년월일 기재

5) 주소

-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상의 사업장 소재지 주소,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상의 주소 기재

* 폐업한 경우 '제작자등 등록 반납 사실증명서'를 수령할 수 있는 주소 기재

6) 전화번호

- 신청인의 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 업무담당자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하며 고객센터 등 기재불가

② 반납 등록정보

- 반납하고자 하는 제작자등 등록증 정보와 동일하게 작성
- 단, 복수의 제작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제작자등이 일부 등록증만 반납할 경우, 해당 등록증 정보만 작성

예시 1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의 등록증 중 이륜자동차만 반납하는 경우

신청인이 자동차 종류에 따라 자동차 제작자등 등록증과 이륜자동차 제작자등 등록증 두 종류의 등록증을 교부받은 상태로 이 중 이륜자동차 등록증만 반납할 경우 '자동차의 종류'에 이륜만 체크(등록증은 유형별로 4개까지 발급받을 수 있음)후, 해당 제작자등 등록번호만 작성

예시 2 국내 제작·조립자와 수입자 등록증 중 수입자만 반납하는 경우

신청인이 제작구분에 따라 국내 제작·조립자 제작자등 등록증과 수입자 제작자등 등록증 두 종류의 등록증을 교부받은 상태로 이 중 수입자 등록증만 반납할 경우 '제작구분'에 '수입자'만 체크 후, 해당 제작자등 등록번호만 작성

③ 반납유형 : 해당사유에 체크 [V]

④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법인인 경우 법인 또는 대표자,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개인인 경우 개인 인장 또는 서명 날인

* 법인의 경우 반드시 **회사명, 대표자, 대표자의 이름 세 가지 요소를** 갖추어서 **서명날인** 예 : [○○주식회사 대표이사 홍길동(인)]

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제작자등 등록 신청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작자등 등록 신청서' 하단의 동의서를 동의 하신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신청하는 제작자가 정비업 등록 업체의 경우

자동차 무상수리 확인서

1. 당사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로서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기술인력 등을 확보 유지하면서 자기인증하여 제작·판매한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49조의3에서 규정하는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 의무를 충실히 이행 하겠습니다.
2.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등록 사항이 변경될 경우 그 사실을 변경사항이 발생되기 최소 00일 전에 국토교통부에 그 사실을 보고 하겠습니다. 끝.

2021.00.00

000자동차정비

대표 : 000

전화번호 : 000-000-0000

직인

붙임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 신청하는 제작자가 정비업 미등록 업체의 경우

자동차 무상수리 대행 계약서

(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 제2항 관련)

본 계약서는 ‘자동차관리법제30조에 의한 ○○○○ 자동차제작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에 의한 ○○○○ 무상수리대행자(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자동차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갑”과 “을” 간의 무상수리 대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01 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자기인증하여 판매한 자동차에 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제1항제1호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을”이 무상수리 대행자로서 이의 원활한 정비를 위하여 “갑”과 “을”의 역할 및 그 이행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이 있다.

제 02 조 [사후관리 시설 및 기술인력의 확보와 유지]

1. “을”은 본 계약기간 동안 갑이 판매한 자동차의 무상수리 대행자로서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로서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기술인력 등을 확보 유지하여야 한다.
2. “을”은 시설 및 사업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계약기간 중 제1항의 조건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갑에게 최소 00일 전에 그 변경 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 03 조 [무상수리]

‘을’은 ‘갑이 자기인증하여 제작판매한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49조의3에서 규정하는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를 하여야 한다.

제 04 조 [계약기간]

1.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00년00월00일부터 00년00월00일로 한다.
2. 갑은 계약기간동안 계약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 00일 까지 국토교통부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 05 조 [필요 규정]

갑과 을 간의 필요 규정 [협조의무, 분쟁의해결, 기타사항 등]

-
-

제 06 조 [준용 규정]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규정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당사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일자 : 20 년 월 일

<p>(갑)</p> <p>주 소 :</p> <p>회사명 :</p> <p>대표자 : (인)</p> <p>연락처 :</p>	<p>(을)</p> <p>주 소 :</p> <p>회사명 :</p> <p>대표자 : (인)</p> <p>연락처 :</p>
---	---

붙임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사본 1부

※ (갑)제작자 날인 시

제작자등 등록 신청서(별지 제18호서식)의 신청인 날인과 동일하게 날인(또는 서명)

1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발급하는 차대번호표기배정서 개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제3호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발급받은 차대번호표기부호배정서 사본(수입자만 해당한다)

- 수입자의 경우 ISO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되는 차대번호표기배정서 (이하 'WMI')로 자기인증 능력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ISO 규정에 의하여 WMI코드의 세번째 자리를 '9*'로 배정받은 경우는 자기인증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500대이하 제작·조립하는 제작자의 경우 ISO규정 (ISO 3780)에 의하여 세번째 자리가 '9'인 국가공통부호(해당국가에서 여러 제작사가 공통으로 사용)를 배정받게 됩니다.

ISO 3780 5.4.2 The national organization shall use the numerical character "9" in the third position in order to identify a manufacturer producing fewer than 500 vehicles per year.

- ISO 3780에서 WMI(world manufacturer identifier)를 관리하는 국제기구를 SAE(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로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제표준화기구 (ISO)에서 발급받은 차대번호표기부호배정서 사본은 SAE에서 발급한 배정서 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ISO 3780 4.2 The assigned WMI codes shall be maintained and checked by the international agency specified in Annex A acting under authorization from ISO.

[Annex A] 'WMI code administration' The international agency responsible for the maintenance of the WMI codes in accordance with this International Standard is the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SAE).

Information concerning the application of new WMI codes can be obtained from the WMI coordinator at the following address :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Inc. (SAE)

2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발급하는 차대번호표기배정서 예시

	 <p>Registration authority for ISO 3780 The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has been appointed by ISO to act as registration authority for th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Standard ISO 3780.</p>
<p>Dear</p>	
<p>In response to your request, we are confirming the following World Manufacturer Identifier (WMI) Code(s).</p>	
<p>WMI Code</p>	<p>Positions 1, 2 & 3 of VIN</p>
<p>Manufacturer</p>	
<p>Country</p>	
<p>Vehicle Type</p>	
<p>Make/Model</p>	<hr/>
<p>Thank you.</p>	
<p>Sincerely,</p>	
<p>CSR / WMI Coordinator</p>	

③ 외국 최초제작자와의 계약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제6호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차대번호표기부를 배정받거나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연간 500대 이상 제작하는 ①외국 최초제작자의 국내대리인으로 지정되어 ②법 제31조에 따른 제작결함의 시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한 자(수입자에 한함)

① 최초제작자의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한다는 내용 포함

- 잘못된 사례 : 대리점 계약서, 딜러 계약서, 판매계약서 등
- 국내 수입사(제작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외국 최초제작자의 대리인 지정을 수락한다는 내용 포함

② 법 제31조의 제작결함 시정에 관한 사항 포함

-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 제작결함과 관련된 사항은 아래문구를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최초제작자 "갑"은 국내대리인 "을"에게 판매한 자동차(이륜자동차) 등이 대한민국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을 확인한 경우 또는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제작결함 시정을 명령받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자동차관리법" 제3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대리인 "을"을 통해 결함내용을 시정조치하여야 하며, 완벽한 시정조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부품을 등을 공급하여야 한다.

만약, 국내대리인 "을"이 시정조치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최초제작자 "갑"이 직접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 * 교체되는 대리인(최초제작자가 기 지정한 국내대리인을 취소하고 교체하여 대리인을 지정)이 신청하는 경우, 기존 국내대리인이 판매한 자동차(또는 이륜자동차)의 제작결함의 시정 및 사후관리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교체되는 사항 증명 필요)

- 또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판매한 자동차에 대한 원활한 정비를 위하여 부품 공급(8년 이상) 및 기술지원, 자료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계약서의 별도 양식은 없으나 기본적인 정보(계약자 정보(WMI 포함), 계약이 미치는 지역, 계약기간, 서명자* 정보 등)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계약서의 외국 최초제작자 서명자는 대표자이거나 한국 내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로서, 계약의 권한이 있는 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자주 묻는 질문(Q&A)

질문 1 동일한 국내 수입사가 두 개 이상의 외국최초제작자 대리인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까 ?

☞ 네. 두 개 이상의 외국 최초제작자의 국내대리인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동일한 외국 최초제작자와 국내대리인이 존재하는 경우는 제외

질문 2 외국 최초제작자의 대리인 지정 계약기간이 만료(또는 변경)된 경우 변경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지 ?

☞ 네. 변경된 계약사항에 대하여 제작자등 등록 변경 신청을 하여야합니다.
* 계약만료로 국내대리인 지정이 해지된 경우 지정수입자가 아닌 개인·병행 수입자로 변경 등록하여야하며, 자동차자기인증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를 통하여 기술검토·안전검사 절차를 거쳐 자기인증하여야함

④ 외국 최초제작자와의 계약서에 국문이 아닌 경우 번역공증*을 서류 제출

- 「공증인법」에 정하는 “공증인”에 의해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33조(영문번역문의 인증)에 따라 발급된 서류*

*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5호 서식]

[별지 제41호서식] <개정 2010.2.5>

Registered No. -

NOTARIAL CERTIFICATE

NAME & ADDRESS
OF THE OFFICE.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m²)

위 번역문은 원문과 상위없음을 서약합니다. I swear that the attached translation is true to the original

서약인 _____ ,
 (인) Signature

등부 년 제 호

Registered No. -

인 증

Notarial Certificate

위 은 본 personally
 공증인의 면전에서 위 번역문이 원문과 상 appeared before me, confirmed that the
 위없음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였다. attached translation is true to the
 original and subscribed his(her) name.

. . .이 사무소에서 위 인증한다. This is hereby attested on this day
 of ,

at this office

공증사무소 명칭

Name of the office

소 속

Belong to

소재지 표시

Address of the office

공증인

(인) (Signature of the Notary Public)

This office has been authorized by the
 Minister of Justice, the Republic of
 Korea to act as Notary Public since

under Law No.

※ 외국 최초제작자와의 계약기간 변경, 계약종료, WMI코드 추가, 국내대리인 권한 양도 시에도 본 매뉴얼 12p에 따른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① **외국 최초제작자와의 계약기간 종료 시**

- 최초 계약서에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명시된 경우
 - 계약서 상에 계약 종료일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반드시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지정수입자로서의 자격이 유지됨
 - 외국 최초제작자가 작성한 “계약기간 연장 확인서” 제출
 -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한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갱신된 계약종료일을 명기(유통기간 X, 판매기간 X)
 - 회사 날인 또는 대표자 서명
 - 최초 계약서를 동봉하여 제출
 - 최초 계약서에 자동차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제작결함 시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계약기간 연장 확인서”에 해당 내용 포함시킬 것
- 최초 계약서에 계약기간 연장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
 - 외국 최초제작자와 국내대리인 간 신규 계약서 제출
- 최초 계약서(또는 국내대리인 지정 문서)에 상의 계약기간과 현재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제작자정보가 상이한 경우
 - 최초 계약서 제출

② **동일 외국 최초제작자의 WMI코드 추가 시**

- 외국 최초제작자가 작성한 “WMI 코드 추가 등록 요청서” 제출
 -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발급한 차대번호표기배정서 제출
 - 차대번호표기배정서 상의 최초제작자명(Manufacturer)이 동일해야 함